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7. 11 선고 2024나4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7. 11 선고 2024나40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 17 선고 2022가단524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날

담당변호사 박주영, 박지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류호문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11.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 17. 선고 2022가단5249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9,556,591원, 원고 B에게 67,755,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D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780,756,347원이고, 이중 사업자금으로 판단된 돈은 244,947,083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액수가 535,809,264원에 이르는 점,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돈이 680,040,32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체한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3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임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체 행위 이외에 D 또는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들어 별지 기재 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이체 행위 이외에 D 또는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 역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제3자에게 출금되어 지급되고 있고, 이와 같은 대부분의 거래내역이 피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 주소지 인근의 거래내역의 경우 피고가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D와 피고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내역은 D가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D와 관련 없이 사용한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자녀인 CF은 4,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CF에게 지급된 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돈의 이체를 두고 D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철, 판사 김경선, 판사 기희광

별지